

2020년 회계 지방세 지출보고서 (비과세·감면 현황)

I.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천원)

구분	'19년(결산)	'20년(결산)	비교 증감
비과세·감면액(A)	209,995,883	207,733,466	△2,262,417
비과세	56,423,920	58,259,126	1,835,206
감면	153,571,963	149,474,340	△4,097,623
지방세 징수액(B)	1,808,189,723	2,338,215,664	530,025,941
비과세·감면율(A/A+B)	10.4%	8.2%	△2.2%p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천원, %)

분 야	'19년(결산)		'20년(결산)		비교 증감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증감율	증감율
총 계	209,995,883	100	207,733,466	100	△2,262,417	△1.1
1 일반공공행정	27,482,259	13.1	25,259,935	12.2	△2,222,324	△8.1
2 공공질서 및 안전	21,632	0.0	448,296	0.2	426,664	1972.4
3 교육	3,323,161	1.6	3,843,426	1.9	520,265	15.7
4 문화 및 관광	7,199,226	3.4	5,410,350	2.6	△1,788,876	△24.8
5 환경보호	3,377	0.0	3,235	0.0	△142	△4.2
6 사회복지	21,105,779	10.1	33,476,881	16.1	12,371,102	58.6
7 보건	533,595	0.3	167,859	0.1	△365,736	△68.5
8 농림해양수산	26,372,757	12.6	27,924,491	13.4	1,551,734	5.9
9 산업·중소기업	34,626,084	16.5	41,961,729	20.2	7,335,645	21.2
10 수송 및 교통	13,950,095	6.6	13,727,999	6.6	△222,096	△1.6
11 국토 및 지역개발	41,202,889	19.6	23,717,895	11.4	△17,484,994	△42.4
12 국가	7,240,623	3.4	12,822,382	6.2	5,581,759	77.1
13 외국	0	0.0	0	0.0	0	0.0
14 기타	26,934,406	12.8	18,968,988	9.1	△7,965,418	△29.6

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천원, %)

분 야	'19년(결산)		'20년(결산)		비교 증감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증감율	증감율
총 계	209,995,883	100	207,733,466	100	△2,262,417	△1.1
보통세	203,598,747	97.0	201,191,815	97.0	△2,406,932	△1.2
취득세	200,779,979	96.0	198,273,357	96.0	△2,506,622	△1.2
등록면허세	2,818,768	1.0	2,918,458	1.0	99,690	3.5
목적세	6,397,136	3.0	6,541,651	3.0	144,515	2.3
지역자원시설세	6,397,060	3.0	6,541,495	3.0	144,435	2.3
지방교육세	76	0	156	0	80	105.3

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천원)

감 면 유 형	'19년(결산)	'20년(결산)	증감액
총 계	209,995,883	207,733,466	△2,262,417
정 당 에 대 한 비 과 세	17	0	△17
지 방 자 치 단 체 및 지 방 자 치 단 체 조 합 에 대 한 비 과 세	23,569,330	20,350,198	△3,219,132
지 방 자 치 단 체 및 지 방 자 치 단 체 조 합 기 부 채 납 부 동 산 에 대 한 비 과 세	3,293,317	4,473,567	1,180,250
지 방 자 치 단 체 등 이 사 용 하 는 공 용, 공 공 용 재 산 에 대 한 비 과 세	24,081	25,865	1,784
주 민 공 동 체 에 대 한 비 과 세	447,365	381,063	△66,302
사 유 도 로 하 천 제 방 구 거 유 지 묘 지 에 대 한 비 과 세	55	75	20
지 방 공 사 등 에 대 한 감 면	148,094	29,167	△118,927
갱 생 보 호 사 업 을 위 한 감 면	137	0	△137

감 면 유 형	'19년(결산)	'20년(결산)	증감액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21,495	448,296	426,801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684	0	△20,684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387,837	959,724	571,887
교육자치단체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4,280	125,172	120,892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28	28	0
교육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3	0	△3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2,825,139	2,754,234	△70,905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 면	85,190	4,268	△80,922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6,946,870	5,403,308	△1,543,562
종교,제사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38	11	△27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02,572	7,031	△95,541
관광단지 등에 대한 감 면	149,746	0	△149,746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 면	0	214	214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 면	3,377	2,883	△494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 면	0	138	138
장애인에 대한 감 면	3,891,097	4,212,007	320,910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 면	977	349	△628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 면	3,619,426	4,177,640	558,214

감 면 유 형	'19년(결산)	'20년(결산)	증감액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 면	996,019	1,176,128	180,109
노동조합에 대한 감 면	13,641	0	△13,64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748,352	863,120	114,76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 면	0	9,376	9,376
주택거래에 대한 감 면	202,839	243,331	40,492
임대주택에 대한 감 면	11,103,923	18,759,997	7,656,07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 면	120,768	94,255	△26,513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 면	127,182	3,596,075	3,468,893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281,555	343,691	62,136
권익증진을 위한 감 면	0	912	912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533,595	167,859	△365,736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11,102,151	12,927,987	1,825,836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 면	6,214	856	△5,358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 사업에 대한 감 면	2,480,377	3,496,415	1,016,038
농업법인에 대한 감 면	5,941,547	4,762,102	△1,179,445
임업인에 대한 감 면	102,014	108,703	6,689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61,775	46,720	△15,055

감 면 유 형	'19년(결산)	'20년(결산)	증감액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234,625	106,545	△128,080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2,105,518	2,248,740	143,222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3,385,206	3,439,657	54,451
농수산물가공사업에 대한 감면	1,017	0	△1,017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952,313	786,766	△165,547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5,343,165	5,752,200	409,035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233	0	△233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0	60,465	60,465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86,649	1,177,491	1,090,842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4,021,428	10,833,895	6,812,467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28,507	29,302	795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2,605,433	986,056	△1,619,377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15,532	12,012	△3,520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32,129	43,225	11,096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5,187	0	△5,187
광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449	1,314	△135

감 면 유 형	'19년(결산)	'20년(결산)	증감액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260	0	△260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22,486,112	23,065,769	579,657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0	319	319
해운 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0	2,300	2,300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82,260	0	△82,260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4,560,267	4,356,034	△204,233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8,072,248	8,245,655	173,407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0	1,209	1,209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1,015,380	1,100,216	84,836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219,940	22,266	△197,674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1,339,070	1,347,933	8,863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0	1,128,002	1,128,0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962,807	282,247	△680,560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389,880	175,960	△213,920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0	760	760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37,861,397	20,625,770	△17,235,627

감면 유형	'19년(결산)	'20년(결산)	증감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0	2,206	2,206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649,735	155,017	△494,718
국가에 대한 비과세	6,998,302	12,696,941	5,698,639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201,270	84,963	△116,307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 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41,051	40,478	△573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5,725,979	8,420,573	2,694,594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53,874	5,723	△48,151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1,829,778	2,013,236	183,458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18,082,735	7,185,249	△10,897,486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0	15	15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910,348	996,666	86,318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67,217	71,349	4,132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3,250	443	△2,807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207,018	271,465	64,447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50,528	0	△50,528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3,679	4,269	590

II.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일반공공행정		합 계	27,482,259	25,259,935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자동차·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1·2호)	소 계	23,569,330	20,350,198
		취득세	21,004,593	17,634,197
		등록면허세	71,478	126,154
		지역자원시설세	2,493,259	2,589,847
2	지방자치단체 등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3의2①)	소 계	3,293,317	4,473,567
		취득세	3,293,317	4,473,567
3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24,081	25,865
		지역자원시설세	24,081	25,865
4	정당에 대한 감면 - 정당에 대해 취득·등록면허·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9①·②·③)	소 계	17	0
		등록면허세	17	0
5	주민공동체에 대한 과세특례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②)	소 계	447,365	381,063
		취득세	356,578	290,803
		등록면허세	7,976	6,556
		지역자원시설세	82,811	83,704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6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3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소 계	55	75
		취득세	0	19
		지역자원시설세	55	56
7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50% 경감하고 주택사업·토지개발사업의 부동산의 경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①) - 지방공단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②)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③)	소 계	148,094	29,167
		취득세	137,421	29,167
		등록면허세	10,673	0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21,632	448,296
8	경생보호사업을 위한 감면 - 한국경생보호공단 등의 경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5①)	소 계	137	0
		취득세	137	0
9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재산·자동차·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③) -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지방세법 §9⑦)	소 계	21,495	448,296
		취득세	21,207	448,000
		등록면허세	266	272
		지역자원시설세	22	24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교육		합 계	3,323,161	3,843,426
10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소 계	387,837	959,724
		취득세	240,173	811,895
		등록면허세	3,097	2,202
		지역자원시설세	144,567	145,627
11	교육자치단체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 비과세(지방세법 §9②)	소 계	4,280	125,172
		취득세	4,280	125,172
12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28	28
		지역자원시설세	28	28
13	교육자치단체 등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45① 2호)	소 계	3	0
		지역자원시설세	3	0
14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⑥)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1⑦) -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소 계	2,825,139	2,754,234
		취득세	1,595,524	1,480,738
		등록면허세	5,857	5,755
		지역자원시설세	1,223,758	1,267,741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15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3①, §43②, §43③, §44)	소 계	20,684	0
		취 득 세	15,300	0
		등록면허세	9	0
		지역자원시설세	5,375	0
16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5②) - 기초과학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의2)	소 계	85,190	4,268
		취 득 세	54,634	2,885
		지역자원시설세	30,556	1,383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문화 및 관광		합 계	7,199,226	5,410,350
17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감면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소 계	6,946,870	5,403,308
		취 득 세	6,191,365	4,616,805
		등록면허세	1,900	1,743
		지역자원시설세	753,605	784,760
18	종교·제사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전력 등에 대한 비과세 - 종교단체·향교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0④)	소 계	38	11
		지역자원시설세	38	11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19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정부 인·허가 또는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도서관의 취득세는 경감, 도서관의 등기·등록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는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②) -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 - (서울 종로구) 인사동·대학로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 감면 - (서울) 공연장에 대한 취득·등록·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경기, 양주)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내 문화예술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감면 - (제주) 공연장 설치 운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소 계	102,572	7,031
		취 득 세	91,552	5,738
		지역자원시설세	11,020	1,293
20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4①) - 평창군에 위치한 대회직접관련시설 중 선수촌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 중과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54⑥)	소 계	149,746	0
		취 득 세	149,746	0

5. 환경보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환경보호		합 계	3,377	3,235
21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8) -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3)	소 계	0	214
		취 득 세	0	214
		지역자원시설세	0	0
22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환경개선 등의 사업용 부동산과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으로 취득하는 선박의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9)	소 계	3,377	2,883
		취 득 세	3,377	2,883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23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 녹색건축물 인증 등급,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른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5~15%를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2①) -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15~20%를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2②) -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해 취득세 10%를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2③) -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4①)	소 계	0	138
		취 득 세	0	138

6. 사회복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사회복지		합 계	21,105,779	33,476,881
24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시각장애(4급)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조례)	소 계	3,891,097	4,212,007
		취 득 세	3,891,097	4,212,007
25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주택, 축사용 부동산 및 재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 - 한센인 소유의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②)	소 계	977	349
		취 득 세	899	264
		지역자원시설세	78	85
26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2①, §22②, §22③, §22⑤)	소 계	281,555	343,691
		취 득 세	166,655	226,725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 사회적기업의 고용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4)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2⑥)	등록면허세	1,685	4,860
		지역자원시설세	113,215	112,106
27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①, §22의2②)	소 계	3,619,426	4,177,640
		취 득 세	3,619,426	4,177,640
28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양로시설,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2호)	소 계	996,019	1,176,128
		취 득 세	988,171	1,168,218
		지역자원시설세	7,848	7,910
29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0의3 1호) -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 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0의3 2호) - 법률구조법인·한국소비자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3①,②)	소 계	0	0
		취 득 세	0	0
30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 노동조합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6)	소 계	13,641	0
		취 득 세	13,641	0
3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입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①)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의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④)	소 계	748,352	863,120
		취 득 세	744,430	859,050
		지역자원시설세	3,922	4,07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3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를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0①) - 보훈병원 의료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0②) - 독립기념관의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0③)	소 계	0	0
		취 득 세	0	0
33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 서민주택(40㎡이하·취득가액 1억원미만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3②)	소 계	202,839	243,331
		취 득 세	202,839	243,331
34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①·③)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 임대용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④)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3)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4)	소 계	11,103,923	18,759,997
		취 득 세	11,076,188	18,749,086
		지역자원시설세	27,735	10,911
3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중에 대한 감면 -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75%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5①)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 -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25%)(지방세특례제한법 §35③)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6억원 이하 100%)(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2)	소 계	120,768	94,255
		등록면허세	120,768	94,255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36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등을 위한 감면 -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6)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으로써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2)	소 계	127,182	3,596,075
		취 득 세	127,182	3,596,075

7. 보 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보 건		합 계	533,595	167,859
37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의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료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③) - (경기 포천)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주민세 면제	소 계	533,595	167,859
		취 득 세	533,541	167,805
		등록면허세	54	54

8.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농림해양수산		합 계	26,372,757	27,924,491
38	농업인에 대한 감면 - 자경농민의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①, ②) - 도로?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③) -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④) - 농기계류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 -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②)	소 계	11,102,151	12,927,987
		취 득 세	11,091,672	12,918,427
		등록면허세	10,479	9,560
39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감면 -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①) -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세율 경감(1000분의 8)(지방세특례제한법 §8④)	소 계	6,214	856
		취 득 세	6,214	856
40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 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의2호) - 경영회생 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환매 취득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 - 영농 규모 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3호) - 제3차 공급목적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3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4호) -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5호)	소 계	2,480,377	3,496,415
		취 득 세	2,480,377	3,496,415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41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농업법인이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①) -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1②) - 농업법인의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④)	소 계	5,941,547	4,762,102
		취 득 세	5,706,836	4,593,985
		등록면허세	234,711	168,117
42	임업인에 대한 감면 - 임업인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 취득세 면제, 99만㎡이하 보전산지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8③)	소 계	102,014	108,703
		취 득 세	102,014	108,703
43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9①)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 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9②) - 출원에 따른 어업권 취득세 면제, 어업권에 관한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③)	소 계	61,775	46,720
		취 득 세	47,247	30,050
		등록면허세	18	0
		지역자원시설세	14,510	16,670
44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 어업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2①) -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2②)	소 계	234,625	106,545
		취 득 세	224,910	93,808
		등록면허세	9,715	12,737
45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등에 융자시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0①1~5)	소 계	2,105,518	2,248,740
		등록면허세	2,105,518	2,248,740
46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	소 계	3,385,206	3,439,657
		취 득 세	3,385,206	3,439,657
47	농수산물가공업에 대한 감면 -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농산물 산지가공업자, 수산물 가공업자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조례) - 지역특산물 생산단지 직접사용 부동산 등 취득·재산세 감면	소 계	1,017	0
		취 득 세	1,017	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48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5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6)	소 계	952,313	786,766
		취 득 세	952,313	786,766

9. 산업 · 중소기업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산업 · 중소기업		합 계	34,626,084	41,961,729
49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해당사업을 위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4년간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①·③)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②) -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호)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의2호)	소 계	5,343,165	5,752,200
		취 득 세	5,305,606	5,702,837
		등록면허세	37,559	49,363
50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취득한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9①)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60①)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회원 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2% 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0②)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취득·등록면허·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④)	소 계	233	0
		취 득 세	233	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51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중소기업자에게 분양·임대 목적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9②) -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기 위해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3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9③)	소 계	0	60,465
		취 득 세	0	60,465
52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3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6) - 시험분석·연구용 담배, 수출상담 견본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6·7호)	소 계	28,507	29,302
		취 득 세	28,507	29,302
53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등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8②)	소 계	260	0
		등록면허세	260	0
54	산업입지 지원을 위한 감면 -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①) - 벤처기업집적시설·산업기숙단지 입주하는 기업의 취득·등록면허·재산세 증가 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58②)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하고 3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③)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재산세 3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④) - 지식산업센터를 직접사용,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35%, 재산세 37.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①) -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의 사업시설용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3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②)	소 계	15,532	12,012
		취 득 세	15,532	12,012
55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2) (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	소 계	2,605,433	986,056
		취 득 세	2,605,433	986,056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56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본점 및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등기 및 사업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그다음 3년간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9) - 공장을 대도시 외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그다음 3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80)	소 계	32,129	43,225
		취 득 세	27,954	38,897
		등록면허세	4,175	4,328
57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83①) -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라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주택 제외)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83②)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면제(조례)	소 계	5,187	0
		취 득 세	5,187	0
58	광업 지원을 위한 경감 - 광업권의 설정·변경 등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2①) - 출원에 따라 취득하는 광업권 및 광산용 지상임목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2②)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석채기능공 훈련시설과 광산근로자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재산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2③)	소 계	1,449	1,314
		등록면허세	1,449	1,314
59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건설기계 등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①) - 무역업자의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는 취득세 1,000분의 20을 경감, 중고 자동차는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②)	소 계	22,486,112	23,065,769
		취 득 세	22,486,112	23,065,769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60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세 면제,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②) - 금융기관의 기업합병·분할등을 위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⑤ 1,2,4,5,6,7,8호) -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①1·2·3·4호)	소 계	86,649	1,177,491
		취 득 세	85,126	1,177,298
		등록면허세	1,523	193
61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등록면허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③ 2-5호, §57의2⑤ 3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④)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현물출자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⑥ 3호)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취득하여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②,③,④)	소 계	4,021,428	10,833,895
		취 득 세	4,021,428	10,833,895

10.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수송 및 교통		합 계	13,950,095	13,727,999
62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사 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세 25% 경감,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63⑤)	소 계	0	319
		취 득 세	0	319
63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국제선박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4①) - 화물운송용·외항여객운송용·원양어업용 선박에 대해 취득세 1% 세율 및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4②) -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취득세 2% 세율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64③) -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137①) -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2호)	소 계	0	2,300
		취 득 세	0	2,300
64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등 취득세 12% 세율 경감,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5)	소 계	82,260	0
		취 득 세	82,260	0
65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 경형 승용·승합·화물차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7①·②)	소 계	4,560,267	4,356,034
		취 득 세	4,560,267	4,356,034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66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면제(취득세액 140만원 한도) 및 공제(140만원초과 시 140만원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③) - 전기자동차 2018.12.31.까지는 200만원 한도로 2019.12.31.까지는 14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6④)	소 계	8,072,248	8,245,655
		취 득 세	8,072,248	8,245,655
67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사업용 부동산 및 자동차검사사용 부동산 취득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9)	소 계	0	1,209
		취 득 세	0	1,209
68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0①)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자가 천연가스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0③)	소 계	1,015,380	1,100,216
		취 득 세	1,015,380	1,100,216
69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취득하는 부동산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1①) - 물류단지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1②)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2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71③) - (충북,충남,경북) 중부권·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사업 지구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소 계	219,940	22,266
		취 득 세	219,940	22,266

11.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41,202,889	23,717,895
70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공익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3①)	소 계	1,339,070	1,347,933
		취 득 세	1,339,070	1,347,933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71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취득세 면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및 보류지에 대한 취득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③) - (제주) 제주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취득자 등에 대한 감면(조례)	소 계	0	1,128,002
		취 득 세	0	1,128,002
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 -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4③1~3호) - 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85㎡이하 주택의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74③4~5호)	소 계	962,807	282,247
		취 득 세	962,807	282,247
73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차 공급용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20% 감면,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6①·②) - (대구 달성군 인천 계양구·남동구·서구, 경기 평택시·여주군·동두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소 계	389,880	175,960
		취 득 세	389,880	175,960
74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 한국수자원공사의 분양 목적 단지조성용,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7②)	소 계	0	760
		취 득 세	0	76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75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 감면,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②)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 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의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③) - 산업단지, 유지지역,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 대수선 취득세 25%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8④)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분양·임대 및 매각 사업, 후생복지·교육사업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5%, 재산세 50% 경감(수도권의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8⑥) - 산업단지 내 개축·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조례) -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에 대체임주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소 계	37,861,397	20,625,770
		취 득 세	37,861,397	20,625,770
7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81①②)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62.5~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1③)	소 계	0	2,206
		취 득 세	0	2,206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77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 기업도시 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15년간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조특법 §121의17, 조례)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하여 하는 사업,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하는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5조의2, 조례)	소 계	649,735	155,017
		취 득 세	649,735	155,017

12.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국 가		합 계	7,240,623	12,822,382
78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지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소 계	6,998,302	12,696,941
		취 득 세	5,612,112	11,297,163
		등록면허세	35,095	22,823
		지역자원시설세	1,351,095	1,376,955
79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소 계	201,270	84,963
		취 득 세	201,270	84,963
80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① 2호, §109②, §145②)	소 계	41,051	40,478
		지역자원시설세	41,051	40,478

13.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기 타		합 계	26,934,406	18,968,988
81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09③ 5호, §145②)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5호, 지방세법 시행령 §137②)	소 계	67,217	71,349
		취 득 세	650	0
		지역자원시설세	66,567	71,349
82	신탁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 -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③ 1,2,3호) - 9억원이하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⑥)	소 계	5,725,979	8,420,573
		취 득 세	5,725,979	8,420,573
83	환매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④, §15① 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73③)	소 계	53,874	5,723
		취 득 세	53,874	5,723
84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 -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세율특례 (지방세법 §15① 2호)	소 계	1,829,778	2,013,236
		취 득 세	1,829,778	2,013,236
85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3,4호) -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1호)	소 계	18,082,735	7,185,249
		취 득 세	18,082,735	7,184,829
		등록면허세	0	420
86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이전한 건축물의 중정가액 상당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5호)	소 계	0	15
		취 득 세	0	15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87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6호)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② 4호)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②)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4호) -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①)	소 계	910,348	996,666
		취 득 세	759,329	841,588
		등록면허세	151,019	155,078
88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2①) - 별정우체국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주민·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2②·③1호)	소 계	3,250	443
		취 득 세	1,525	0
		지역자원시설세	1,625	1,725
89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 §87② 1호) - 신협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가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교육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 §87② 2호)	소 계	207,018	271,465
		취 득 세	207,018	271,465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천원)		
		세 목	'19년(결산)	'20년(결산)
90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8①)	소 계	50,528	0
		취 득 세	50,528	0
91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 계	3,679	4,269
		등록면허세	3,467	3,934
		지방교육세	76	156
		지역자원시설세	136	179